

# 롯데케미칼주식회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롯데케미칼주식회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3조(권한)

-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-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, 제542조의6 제1항·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 <개정 2020.04.23>

## 제 2 장 구 성

### 제4조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 만료·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.
- ⑤ 제2항에 의한 구성을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·사임 등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·의무가 있다.

### 제5조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·출장·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제4조 제3항 및 제5항은 위원장의 임기에 준용한다.

## 제 3 장 회 의

### 제6조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유고·출장·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 
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7조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 소집 시 회의일을 정하고 회의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 제8조(결의방법)
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### 제9조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2. 기타 사외이사후보의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## **제10조(관계인의 출석 등)**

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# **제11조(의사록)**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 **제 4 장 보 칙**

#### **제12조(간사)**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#### **제13조(규정의 개정)**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#### **부 칙(2020.4.23)**

이 규정은 202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**부 칙(2009.6.24)**

이 규정은 200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**부 칙(2005.3.18)**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